#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0월 2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10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년 10월 30일) 상정, 의결

## 2. 제안 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하수과장 윤범수)

### 제안이유

○ 부천시하수도요금 조정 및 업종 통폐합과 누진체계 개편용역 실시(2002. 11. 16 ~ 2002. 12. 21) 결과에 근거하여 2004년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27% 인상

○ 표준 하수도사용조례기준(2002. 1. 12, 환경부훈령 제509호)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 업종 구분을 최소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2004년부터 업종별 요금을 평균  27%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60%까지 조정함.(안 별표1)

○ 동일 시설내에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용도로 사용할 경우업종 구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사용량의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함.(안 제16조 제4항, 신설)

○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을 준용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을 정함.(안 제16조 제4항, 신설)

○ 업종구분을 현행 6개업종(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 산업용)을 4개업종(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누진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2)

○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정함.(안 별표6, 신설)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 답 변 |
|---|---|
| ◦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경제여건이 호전된 이후 요금 인상하면 안되는가 ? | ◦ 서민가계 및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 요인은 111%이나 이를 감안하여 금번에는 평균 27%만 인상하게 되었음. |
| ◦ 하수처리장 건설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집행됨으로 인해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아닌지 ? | ◦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투자 자금은 국·도비 및 시비와 인천시 부담금등으로 충당되며 부천시 부담은 23.5%이고 하수도 공기업의 결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 ◦ 하수도사용량에 대한 검침방법은 ? | ◦ 상수도 계량기에 의한 검침량으로 하수 배출량을 조정 부과하게 됨. |
| ◦ 굴포천 하수처리장의 건설이 완료되면 하수도 사용료의 인하는 가능한가? | ◦ 물가상승등을 고려하여야 되겠지만 시설 투자비용이 줄어든다면 경영 관리비용등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성 있게 조정될수 있음. |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제195호 |
|---|---|
| 의 결 년월일 | 2003. 10. 31 (제108회) |

제출년월일 : 2003.10. 2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부천시하수도요금조정 및 업종통폐합과 누진체계 개편용역 실시(2002.11.16~2002.12.21)결과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27% 인상하고,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2002. 1.14, 환경부훈령제509호)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과 업종구분을 최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가. 하수도요금현실화추진계획에 의하여 2004년도부터 업종별 요금을 평균 27%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60%까지 조정함.(안 별표1)

나. 동일 시설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종구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총사용량의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도록 정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다.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을 준용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정함.(안 제16조제4항의 신설)

라. 업종구분을 현행 6개업종(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 산업용)을 4개업종(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누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2)

라.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정함.(안 별표6 신설)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동일 시설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 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6과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

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 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할 것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할 것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

공원법 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할 것

○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 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

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할 것.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4. 제1호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출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과 당해지역의 계획인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에 의한 일최대하수량 원단위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할 것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전에 징수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징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하수도사용료요율표(제16조제1항관련)

| 구분 / 업종 | 사용요율 | | 비고 |
|---|---|---|---|
| | 사용구분(㎥/월) | ㎥당 단가(원) | |
| 가정용 | 1 ~ 20<br>21 ~ 30<br>31이상 | 125<br>190<br>300 | |
| 일반용 | 1 ~ 50<br>51 ~ 100<br>101 ~ 300<br>301 ~ 500<br>501 ~ 1000<br>1001이상 | 205<br>500<br>750<br>850<br>900<br>950 | |
| 대중탕용 | 1 ~ 1000<br>1001 ~ 1500<br>1501 ~ 2000<br>2001이상 | 210<br>240<br>280<br>330 | |
| 산업용 | ㎥당 | 225 | |

주)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 2]

# 하수도사용업종구분표(제16조제2항관련)

| 업 종 별 | 구 분 내 용 |
|---|---|
| 가 정 용 |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기숙사 포함)<br>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사서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가게<br>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 일 반 용 | 1.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br>2.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운반급수 : 최종단계요율 적용)<br>3.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최종단계요율 적용) |
| 대중탕용 | 일반대중 목욕장업 |
| 산 업 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6]

#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제21조제3항제2호관련)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text{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text{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times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text{일})}{\text{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m^3/\text{일})} \times a$$

※ 총사업비는 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text{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text{하수관거 총사업비} \times \frac{\text{개발지역내 발생하수량}(m^3/\text{일})}{\text{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m^3/\text{일})} \times a$$

※ 총사업비는 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연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100}\right)^n$$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연수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6조(사용료) ①~③ (생 략) | 제16조(사용료) ①~③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④동일 시설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
| 제21조(원인자부담금) ①시장은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원인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br>1. 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2/3이상<br>2.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액<br>3.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시설 또는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 비용의 전액<br>②제1항의 비용산출방법에 대하 | 제21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br>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

| | |
|---|---|
| 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br>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수량으로 한다.<br>④원인자 부담금은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 착공전에 징수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따라 별표 6과 같이 산정한다.<br>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할 것<br>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br>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br>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br>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

| | |
|---|---|
| | 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할 것<br>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br>○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br>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br>(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br>(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

| | |
|---|---|
| | 수출자유지역 조성, 공장부지조성 등)<br>(3) 공항의 건설사업<br>(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br>(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br>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할 것<br>○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

| | |
|---|---|
| |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할 것.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br>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br>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 |

| | |
|---|---|
| | 는 경우<br>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br>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br>2.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br>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br>4. 제1호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출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과 당해지역의 계획인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에 의한 일최대하수량 |

| | |
|---|---|
| | 원단위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할 것<br>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 전에 징수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징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